▌이베로아메리카 제27권 2호 [2025. 12] : 113~152
https://doi.org/10.19058/iberoamerica.2025.12.27.2.113

브라질 환경 담론의 전환과 자연의 권리 법제화 동향*

The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Discourse and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s of Nature in Brazil

임 소 라**
(Lim, Sor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Brazil's environmental discourse and the emerging movement toward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s of Nature. Drawing upon constitutional, legislative, and judicial developments, it explores how Brazil has moved from an anthropocentric mod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oward an incipient form of ecological constitutionalism. The analysis reveals that Article 225 of the 1988 Federal Constitution, although centered on the human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has gradually been reinterpreted to encompass the intrinsic value of ecosystems.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municipal charters recognizing nature's legal personality and key judicial precedents such as ADI 4983 (2016) and the 2005 STJ ruling on animal rights, Brazil has begun to articulate a new legal paradigm

* 이 논문은 2025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2025 Environment and Human, Climate Change and Polar Area"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 2019S1A6A3 A02058027)이며,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E-mail: angelalim@hufs.ac.kr

that situ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a broader framework of social and ecological justice. Yet, the study also identifies persistent structural limitations: the lack of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nature's rights, uneven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norms, and limited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Afro-Brazilian communities in policy making.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t proposes four directions for reform: constitutional codification of the Rights of Nature, institutional collaboration with traditional communities, strengthening of enforcement mechanisms, and expans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ltimately, the Brazilian experience suggests that the Rights of Nature discourse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legal innovation but as a decolonial effort to restore cultural roots and to redefine law as an ethical language of coexistence among all forms of life.

Key words: Environmental discourse, Rights of nature, Environmental justice, Article 225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Ⅰ. 들어가며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대를 보유한 국가로서, 생물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 수행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토착 원주민 공동체의 생존 문제는 모두 아마존 보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협력의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브라질의 자연권(direitos da

natureza) 사상 역시 초기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 담론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 문제가 단순한 생태 보전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환경정의(justiça ambiental)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2001년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국제 환경정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던 브라질은 이후 지역 차원의 환경정의 네트워크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환경정의는 인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전제로, 환경의 혜택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이는 환경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 토지 소유 구조,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하며, 특히 소외된 지역 공동체나 취약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환경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농업 구조와 토지 통합,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브라질 특유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며(웬디 월포드 2012, 286-291), 자연권 사상과 교차하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다.

자연권 사상은 생태계와 자연환경 자체에 법적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법적 고려의 대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다. 기존 법체계에서 자연이 주로 인간의 소유·관리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적·사법적 시도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생태 중심주의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기후 위기와 전 지구적 환경 파괴에 직면한 오늘날의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법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에콰도르가 2008년 헌법에서 자연을 '어머니 대지'라는 의미의 '파차마마(Pachamama)'로 명시하고, 볼리비아가 2010년 「어머니 지구의 권리 법(Ley de Derechos de la Madre Tierra)」을 제정한 이후, 자연권 개념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조희문 2020, 454-458).

브라질은 환경 보호 분야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최승필 2011, 196). 1988년 제정된 연방헌법 제225조는 모든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및 사회의 환경 보호 의무를 명시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헌법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비록 연방헌법이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처럼 '자연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연방헌법 제225조의 해석을 확장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입법 사례가 점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페르남부쿠(Pernambuco), 혼도니아(Rondônia) 등 4개 주의 6개 도시가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파라(Pará), 파라이바(Paraíba), 바이아(Bahia) 주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1)]

자연권 논의는 지방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 정치의 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2023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브라질 연방하원의원 셀리아 샤크리아바(Célia Xakriabá)는 자연을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헌법개정안(Proposta de Emenda Constitucional, PEC)을 공식 발의하였다. 샤크리아바는 사회주의와 자유당(PSOL) 소속의 원주민 여성 의원으로, 원주민·성소수자·환경운동가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환경 보전 방식은 자연의 권리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생존권 보장은 곧 자연 보전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샤

1) 브라질에는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유사한 법률·판례·법령 통합 검색 포털 LexML Brasil이 있다. 이를 통해 접근 가능한 공적 판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조례 원문에 근거할 때, 2025년 현재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을 채택한 지방정부로는 페르남부쿠주의 보니투(Bonito)와 파우달류(Paudalho)시, 산타카타리나주의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ópolis)시,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세후(Serro)와 포르테이리냐(Porteirinha)시, 혼도니아주의 과자라미림(Guajará-Mirim)시가 있다.

크리아바 의원이 발의한 자연권 헌법 개정안은 특정 개별 의원의 단독적 성과라기보다, 브라질 원주민 운동의 정치적 세력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원주민 의원단, 이른바 '코카르 의원단(Bancada do Cocar)'이 공유해 온 집단적 의제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원주민 운동이 축적해 온 생태적 윤리와 자연관을 헌법 질서의 언어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인 셈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샤크리아바 의원은 '코카르 의원단'으로 대표되는 원주민 집단 정치의 제도권 발화자로, 헌법 개정안은 그 집단적 의제의 제도적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법적 흐름 속에서 브라질 국가 환경정책법(Política Nacional do Meio Ambiente, PNMA)은 환경영향평가, 시민 참여, 공공 책임 등의 원칙을 명시하며 정부·기업·시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의회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의 일반 환경 인허가 제도 개편이 추진·입법화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통제의 강도와 공공 감독 메커니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와 인권·환경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다.[2] 또한 브라질의 환경 법 집행은 위반 적발·제재 부과 이후에도 행정 심급과 소송 절차가 장기화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벌금의 확정·징수 및 복원 명령의 이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인력·예산 및 현장 집행 역량의 제약 역시 단속·제재의 실효성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PNMA가 전제하는 '예방·참여·책임' 원칙이 실제 정책·사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Nunes et al. 2024, 3-7).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브라질의 환경 담론이 어떻게 인간중심적 보호 담론에서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

2) 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5), "UN experts welcome Brazil's veto of environmental licensing bill provisions,"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5/09/un-experts-welcome-brazils-veto-environmental-licensing-bill-provisions (2025.12.8).

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자연권 개념이 어떠한 사회적·법적 맥락 속에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자연권 담론의 철학적 기반과 국제적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브라질의 자연권 입법화 동향을 지방 입법과 사법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브라질 자연권 법제화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환경정의와 생태 법학의 접점에서 지속 가능한 법·사회 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브라질의 환경 문제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

1. 브라질의 생태 및 환경 문제

15세기 이후 약 4세기에 걸친 유럽의 식민 지배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에게 언어·종교·역사·문화의 파괴와 더불어 토지·노동력·자연 자원의 광범위한 수탈을 초래했다. 그 결과, 독립 이후에도 원주민은 구조적 소수자로 주변화되었고, 인권·불평등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 잔재 청산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김봉철 외 2023, 333). 브라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포르투갈의 식민화는 단순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동반하며 전통 원주민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다. 국명의 기원이 된 브라질 나무 '파우 브라지우(pau-brasil)'는 대서양림(Mata Atlântica) 자생종으로 16세기 초 식민 경제를 지탱했으나, 유럽에서 고가로 거래된 적색 염료 채취를 위한 대량 벌목과 강제 노동을 촉발하며 삼림 생태계 파괴와 공동체 붕괴의 출발점이 되었다(Patriota 2008, 611-612). 오늘날 브라질 나무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전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자원 채취 중심의 개발이 초래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원 채취 중심의 개발로 인한 환경·사회적 손실과 피해는 비단 브라질 나무의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 브라질의 식민·근대 경제는 사탕수수와 커피의 단작(單作) 플랜테이션에 의존해 발전했다.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는 사탕수수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는 커피가 국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북동부와 남동부의 광범위한 숲이 농장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대서양림은 원래 면적의 약 12%만 남게 되었고, 산림 소실은 토양 영양 고갈·침식, 가뭄·홍수의 빈발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을 증폭시켰다.[3)]

요컨대, 현재 브라질이 직면한 환경 문제의 상당수는 브라질 나무, 사탕수수, 커피 등과 같은 수출 지향적 1차 상품 경제의 구조적 유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포르투갈 식민 지배는 브라질을 세계적 설탕·커피 생산지로 부상시켰지만, 동시에 삼림 파괴·토양 황폐화·수질 오염·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원주민 생존 터전의 말살, 흑인 노예노동의 제도화, 대토지 소유 심화 등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하워드 W. 프렌치 2023).

실제로, 브라질의 환경위기는 생태적 차원을 넘어 역사·사회·문화의 복합적 층위를 갖는다. 세르지우 부아르키 지 올란다(Sérgio Buarque de Holanda, 1902-1982)는『브라질의 뿌리(Raízes do Brasil)』(1936)에서 식민 초창기부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이득"을 추구하는 태도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토지를 '지속 가능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관행을 비판한다(De Holanda 2017, 72).

---

3) 사탕수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 폐기물과 찌꺼기(vinhoto) 등의 유출은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였으며(Dean & Schwartz 1997), 대규모 플랜테이션 커피의 '양지 재배(sun-grown)' 확산은 수분 유지력 저하로 관개 수요를 급증시켰다(Padovan et al. 2024, 63-88).

포르투갈의 문화·언어 정책 또한 생태 지식의 단절을 심화시켰다. 16-18세기 예수회는 원주민의 '문명화'를 명분으로 선교촌 '헤두상(redução)'[4]을 설립해 가톨릭 교리와 유럽식 생활양식을 강요했고, 토착어 사용을 금지하여 포르투갈어 혹은 '링구아 제라우(língua geral)'[5]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정책은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식과 전통적 생활 방식 역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양은미 2023, 136-138). 아프리카계 노예에게도 언어·종교적 억압이 가해지면서 '크리올어(crioulo)'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소멸했고(Castro 1983, 81-106), 아프리카계 브라질 종교인 '칸돔블레(candomblé)'는 이교로 간주되어 오랜 기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Carneiro 1978, 15-37).[6] 도주 노예 공동체 '킬롬부(quilombo)'[7] 역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의 문화·생태적 자립을 구현한 공

4) 예수회가 구축한 '헤두상'은 '미송이스(missões, 미션)'라고도 불리며, 브라질 남부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지역에 걸쳐 약 30여 개가 설립되었다. '헤두상'은 단순한 전도센터나 교회 부속 시설이 아니라, 원주민을 일정 공간에 모아 조직·관리한 정착형 공동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과 생활 공간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조직체였다. 실제로 '헤두상'은 예수회의 전략적 정착 정책 속에서 인디언 사회를 일정 공간에 집단적으로 정주시키고 통제하려는 물리적·행정적 구조로 기능했다. 반면, '미송이스'는 이러한 물리적 정착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종교적·전도적 활동과 커뮤니티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육·문화적 통합 노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헤두상'의 정착 공동체가 종교적·문화적 목적을 통해 내부적으로 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Soster and Pratschke 2018).

5) 선교사들이 만든 혼합 토착어이다.

6) 1891년 연방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보장했지만, 칸돔블레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지배 아래 주변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이를 범죄와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았다. 아프리카계 브라질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로 오늘날 브라질의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포에이라(capoeira) 역시 19세기 후반까지 범죄로 간주되어 이를 수행하는 자는 투옥되거나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 1890년 브라질 형법에서는 카포에이라를 행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1930년대까지 유지되었다(Santos 2023, 1-21).

7) 킬롬부는 도망친 노예, '마룬(maroon)'들이 형성한 자치 공동체로, 포르투갈 식민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한 곳이었다. 브라질 전역에 수천 개의 킬롬부가 존재했으며, 가장 큰 규모의 공동체는 약 3만 명 이상의 도주 노예들이 거주했던 '팔마리

간이었으나, 식민 당국의 지속적 토벌로 쇠퇴했고 그 자리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대체했다.

1822년 브라질의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환경 파괴와 원주민·흑인 노예 착취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850년 토지법은 공공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하여 대농장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원주민의 토지권을 축소했다. 이후 군사독재 시기 개발주의와 국가 통합 명목의 인프라 확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이미정 2023, 177).[8)]

킬롬부의 토지권도 지연된 정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노예제 폐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방헌법 제68조는 킬롬부 후손의 점유 토지에 대한 영구 소유권과 국가의 등기 발급 의무를 명시했으나, 시행은 장기간 정체되었다. 1995년 파라 주 보아비스타(Boa Vista) 공동체의 첫 공식 인정 이후 2023년 기준 211개 지역만이 소유권을 획득했으며, 여전히 다수의 공동체가 헌법 보장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9)]

이처럼 오늘날 브라질이 직면한 환경 문제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 및 전통 공동체의 보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3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과 관련한 쟁점, 이른바 '마르쿠 템포라우(Marco Temporal)'에 대한 심판에서 원주민 측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시기 제한 해석을 바로잡았다. 헌법 제231조는 원주민의 사회조직·관습·언

스 킬롬부(Quilombo dos Palmares, 1605~1694)'이다. 포르투갈 식민 당국과 백인 농장주들은 킬롬부를 반란 세력으로 간주하고 군대를 보내 100년 가까이 지속된 공동체를 파괴했다. 1694년, 포르투갈은 팔마리스 최후의 지도자 '줌비 두스 팔마리스(Zumbi dos Palmares)'를 살해하고,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시켰다. 이후에도 킬롬부 공동체는 계속 존재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20세기까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Carneiro 1958, 13-25).

8) 일례로, 브라질의 소고기 생산량은 1961년 13,773톤에서 2019년 166만 톤으로 약 120배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산림 파괴가 발생했다. 또한, 대두와 옥수수 재배 면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유사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었다(장수환 2021, 263-266).

9) Comissão Pró-Índio de São Paulo, "Quilombolas no Brasil," https://cpisp.org.br/direitosquilombolas / observatorio-terras-quilombolas/quilombolas-brasil/ (2025.2.4).

어·신념·전통 및 전통적 점유 토지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한다. 이 조항은 1988년 헌법 공포를 기준으로 구현된 것이다.[10] 해당 결정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억제와 원주민 권리 보장의 분기점이 되었으며(김봉철/임소라 2024, 121), 열대우림 보전과 인권 통합에 관한 국제적 환경 거버넌스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역사적·구조적 맥락은 브라질의 환경 보호가 단순한 생태 보전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인권 보장을 결합한 법제적 접근을 요구함을 보여준다. 즉, 환경 파괴의 문제는 경제 개발의 불균형뿐 아니라 토지 소유 구조,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억압 등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주민과 킬롬부 공동체의 권리 실현은 단순한 사회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숲과 생태계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의 근간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지방 차원의 조례와 판례, 나아가 연방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 있는 개발 규제와 집행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와 공공 감시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발 중심의 법·정책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 생태 지식과 문화유산 보호를 통합하는 접근 역시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원주민 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 온 생태적 지식을 현대 환경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지속

10) 브라질 정부는 1988년 10월 5일 헌법 공포를 기준으로, 원주민이 점유하거나 법적 분쟁 중이던 토지에 한해 그들의 점유 및 사용 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해석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의 군사정부 시기에도 유지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원주민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났다. 한편, 개발업자들은 해당 토지에서 삼림 벌채와 광물 채굴을 진행하며 원주민 공동체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김영철 2021, 31-34).

가능한 환경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브라질의 환경 문제는 단순한 생태 훼손의 결과가 아니라 식민 지배, 개발주의, 토지 소유 구조, 그리고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의 주변화가 중첩된 역사적·구조적 산물이다. 이러한 복합적 맥락 속에서 브라질 사회가 직면한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은 기술적 관리나 보전 정책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하는 사상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주목되는 개념이 바로 '자연과의 조화(harmonia com a natureza)'와 '환경정의(justiça ambiental)'이다. 이는 단지 윤리적 과제가 아니라, 법제적 대응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사상적 전환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논의될 자연권 법제화의 구체적 방향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자연과의 조화'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자연권 개념의 적용

'자연과의 조화'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개념이다. 이는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이용 대상이나 관리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생명체 전체가 상호 의존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생태 법학이 추구하는 핵심 원리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 중심적 인식으로의 전환을 이끈다(조희문 2025, 17-33).

브라질의 '자연과의 조화' 사상은 주로 원주민과 아프로-브라질 공동체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Pelizzon and Santiago 2020, 478). 이들의 삶의 방식은 자연을 생명적 실체로 인식하고, 숲과 강, 동식물, 인간이 모두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환경 문제를 단순한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환경정의 담론의 철학적 토대가 된다. 환경정의는 인간이 건강하

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전제로 하며, 환경의 혜택과 부담이 사회 집단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의 생태적 지식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자, 환경정의의 실천적 전제가 된다.

브라질의 전통 공동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맞추어 삶을 영위해 왔다. 이들의 의례와 신앙, 생산 방식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을 전제로 하며(Castro 1996, 116-120), 이러한 세계관은 현대 생태 법학이 제시하는 '자연의 권리' 개념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특히 아마존 지역 원주민 사회와 일부 아프로-브라질 공동체의 생태적 사유는 자연과 우주, 인간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담론과 결합되어 환경 문제를 인권과 사회 정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연권' 개념은 바로 이러한 생태적 세계관을 근대 법체계의 언어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인간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객체가 아니라 고유한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권의 법제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수립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추상적 가치가 아닌 구체적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 자연권 입법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환경 파괴를 수반해 왔고, 그 피해가 원주민과 취약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온 현실에서,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곧 환경정의의 실현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과의 조화'와 '환경정의'는 서로 분리된 담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생태적 균형이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자연권의 법제화는 단순한 생태 보전을 넘어 사회 정의,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을 포괄하는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 브라질의 사례는 전통적 생태 지식과 근대 법체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이미 브라질 사회의 법제적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라는 생태 중심적 인식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여러 지방정부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조례와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헌법 개정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자연권 법제화 동향을 판례, 지방 입법, 연방헌법 논의라는 세 축을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브라질의 환경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구조 속에 제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Ⅲ. 브라질의 주요 환경 법제

1. 브라질 연방헌법 제225조와 자연권의 법제화 논의

브라질 연방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 질서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제3항), 환경 보호에 관한 헌법적 기초는 제225조에 집약되어 있다. 제225조는 환경을 인간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보전의 의무를 국가와 사회 전체에 부과한다.

>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1988)/제225조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재이자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11]

브라질 연방헌법 제225조는 환경 보호의 효과적인 실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보장과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법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12]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Princípio do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연방헌법 제225조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 보호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닌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원칙과 부합한다. 즉, 자연의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때 생태적 균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2) 협동의 원칙(Princípio da Cooperação)

환경 보호를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 의

11)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DE 1988/Art. 225º Todos têm direito ao meio ambiente ecologicamente equilibrado, bem de uso comum do povo e essencial à sadia qualidade de vida, impondo-se ao Poder Público e à coletividade o dever de defendê-lo e preservá- lo para as presentes e futuras gerações (Presidência da República Casa Civil 1988).

12)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환경법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브라질 역시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반영하고 있다(최승필 2011, 202).

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보호가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동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환경 보호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3) 예방의 원칙(Princípio da Prevenção)

연방헌법 제225조는 자연의 개발과 이용이 생태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방의 원칙과 연결된다. 예방의 원칙은 환경 피해가 발생한 후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환경 보호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점은 예방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오염자 책임의 원칙(Princípio do Poluidor-Pagador)

환경이 훼손된 경우 이를 복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을 훼손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책임의 원칙과 연계될 수 있다. 오염자 책임의 원칙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한 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 훼손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환경 복원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방헌법 제225조의 조항과 조화를 이룬다.

5) 공공 참여의 원칙(Princípio da Participação Pública)

연방헌법 제225조가 강조하는 환경 보호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의무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환경 정책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 참여의 원칙은 시민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환경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브라질 헌법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환경 보호를 위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단순히 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기업·개인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 환경법과 비교법적 흐름 속에서 이미 확립된 규범을 헌법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에 가깝다. 따라서 제225조의 독자성은 원칙의 열거 그 자체보다는, 환경 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키고 이를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적 구성은 브라질 환경법의 강력한 규범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동시에 명확한 한계도 드러낸다. 제225조가 보호하는 환경권은 일관되게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권리로 해석되어 왔으며, 자연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보유하는 주체라기보다 인간을 위한 보호 대상 또는 공공재로 전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브라질 헌법은 환경 보호의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기는 하지만, 자연을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관점의 환경권 구조는 환경 보호의 제도화에는 기여했으나, 개발 정책과 충돌하는 국면에서는 반복적으로 한계를 노정해 왔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자원 채굴, 농업 확장 과정에서 환경 훼손의 피해가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는 현실이 그에 대

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를 단순한 행정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려는 자연권 담론이다. 자연권 논의는 제225조가 설정한 환경 보호의 헌법적 틀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인간 중심적 전제를 보완·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권은 환경권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 보호의 헌법적 근거를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려는 규범적 실험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브라질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연권 논의는 연방헌법 제225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대체 담론이 아니라, 동일한 헌법적 가치 체계 내부에서 발생한 긴장과 재해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연방 차원의 명문 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 개정과 사법적 해석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제시한 환경 보호의 원칙이 어떻게 해석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적 장(場)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브라질의 지방 입법과 자연권 인정 사례

브라질에서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려는 시도는 연방헌법 차원의 명문화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Lei Orgânica) 개정 및 개별 법률 제정의 형태로 먼저 가시화되었다. 그 출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2017년 페르남부쿠주 보니투(Bonito)시 기본법 개정이다. 보니투시는 기본법 제236조에서 자연이 "존재하고, 번영하며, 진화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와 공동체가 현재·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 과정을 방어·보존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Câmara Municipal de Bonito/PE 2020,

107).[13] 이듬해인 2018년 초 페르남부쿠주 파우달류(Paudalho)시 역시 유사한 문언 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의 존재·번영·진화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자연 공동체" 구성원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 및 생태계 과정 유지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Câmara Municipal de Paudalho/PE 2020, 49).[14] 이 두 조항은 모두 자연권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 실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공동체(coletividade)의 책무를 병렬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2019년에는 산타카타리나주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ópolis)시가 주도로

13) LEI ORGÂNICA DE BONITO/Art. 236. O Município reconhece o direito da natureza de existir, prosperar e evoluir, e deverá atuar no sentido de assegurar a todos os membros da comunidade natural, humanos e não humanos, no Município de Bonito, o direito ao meio ambiente ecologicamente saudável e equilibrado e à manutenção dos processos ecossistêmicos necessários à qualidade de vida, cabendo ao Poder Público e à coletividade, defendê-lo e preservá-lo, para as gerações presentes e futuras dos membros da comunidade da terra.
보니투시 기본법/제236조. 보니투시는 자연이 존재하고, 번영하며, 진화할 권리를 인정하며, 보니투시의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생태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은 이를 방어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Câmara Municipal de Bonito/PE 2020, 107).

14) LEI ORGÂNICA DE PAUDALHO/Art. 182 - O município reconhece o direito da Natureza existir, prosperar e evoluir e deverá atuar no sentido de assegurar a todos os membros da comunidade natural, humanos e não humanos, do município do Paudalho, o direito ao meio ambiente ecologicamente saudável e equilibrado e à manutenção dos processos ecossistêmicos necessários à qualidade da vida, cabendo ao município e à coletividade, defendê-lo e preservá-lo para as gerações presentes e futuras dos membros da comunidade da Terra.
파우달류시 기본법/제182조. 파우달류시는 자연이 존재하고, 번영하며, 진화할 권리를 인정하며, 파우달류시의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생태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은 이를 방어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Câmara Municipal de Paudalho/PE 2020, 49).

서는 최초로 기본법 제133조에서 자연에 "권리 주체성(titularidade de direito)"을 부여한다는 표현을 포함시키며, 자연과의 조화, 생태계 과정의 보전·회복·복원, 도시·농촌 환경의 사회생태적 회복력(resiliência socioecológica) 등을 지방정부의 과제로 명시하였다(Câmara Municipal de Florianópolis/SC 2019).[15] 이 조항은 보니투시와 파우달류시의 "존재-번영-진화" 문언을 반복하기보다, '자연권' 선언을 도시계획·자원관리·농생태 실천과 연결하여 규범적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022년에는 미나스제라이스주 세후(Serro)시가 기본법 제157조에서 자연의 존재·번영·진화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 과정 유지와 환경의 균형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였다(Câmara Municipal de Serro/MG 2022).[16] 이어

15) LEI ORGÂNICA DE FLORIANÓPOLIS/Art. 133. Ao Município compete promover a diversidade e a harmonia com a natureza e preservar, recuperar, restaurar e ampliar os processos ecossistêmicos naturais, de modo a proporcionar a resiliência socioecológica dos ambientes urbanos e rurais, sendo que o planejamento e a gestão dos recursos naturais deverão fomentar o manejo sustentável dos recursos de uso comum e as práticas agroecológicas, de modo a garantir a qualidade de vida das populações humanas e não humanas, respeitar os princípios do bem viver e conferir à natureza titularidade de direito.
플로리아노폴리스시 기본법/제133조. 플로리아노폴리스시는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증진하며, 자연 생태계를 보존, 회복, 복원 및 확장하여 도시와 농촌 환경의 사회생태적 회복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자연 자원의 계획 및 관리는 공용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태농업적 실천을 장려하여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참살이의 원칙을 존중하며 자연에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Câmara Municipal de Florianópolis/SC 2019).

16) LEI ORGÂNICA DE SERRO/Art. 157. O Município de Serro reconhece à Natureza a titularidade dos direitos de existir, prosperar e evoluir, devendo assegurar a todos os membros da comunidade natural, humanos e não humanos, do Município de Serro, o direito ao meio ambiente ecologicamente saudável e equilibrado e à manutenção dos processos ecossistêmicos necessários à qualidade de vida, cabendo ao Poder Público e à coletividade, defendê-lo e preservá-lo, para as gerações futuras dos membros da comunidade da Terra.
세후시 기본법/제157조. 세후시는 자연이 존재하고, 번영하며, 진화할 권리를 인정하며, 세후시의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생태적으로 건

2023년에는 혼도니아주 과자라미림(Guajará-Mirim)시가 기본법 제126조에서 주민의 실효적 참여를 전제로 환경의 보존·방어·회복·개선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자연 구성원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Câmara Municipal de Guajará-Mirim/RO 2023).[17] 과자라미림의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로 채택해 온 "존재-번영-진화"의 선언적 문언을 넘어, 주민 참여와 환경의 보존·관리·개선에 관한 행정적 의무 구조 속에서 자연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 법안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본법 개정에 따라 브라질 북서부 지역의 라제강(Rio Laje)[18]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는 브라질에서 하천의 법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지방 입법 사례로, 2024년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포르테이리냐(Porteirinha)시가 모스키투강(Rio Mosquito)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 포르테이리냐시는 법률 제2.251호를 통해 모스키투강의 "고유 권리"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생태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은 이를 방어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Câmara Municipal de Serro/MG 2022).

17) LEI ORGÂNICA DE GUAJARÁ-MIRIM/Art. 126. O Município providenciará, com a participação efetiva da população, a preservação, conservação, defesa, recuperação e melhoria do meio ambiente natural, arficial e do trabalho, atendidas as peculiaridades regionais e locais, para assegurar a todos os membros da Natureza, seres humanos ou não, o direito ao meio ambiente ecologicamente saudável e equilibrado, em harmonia com as necessidades sociais e ecológico-econômicas dos seres humanos.
과자라미림시 기본법/제126조. 과자라미림시는 지역 및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자연적, 인위적 환경을 비롯한 근로환경의 보존, 보호, 방어, 복구 및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의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필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Câmara Municipal de Guajará-Mirim/RO 2023).

18) 해당 하천은 포르투갈어 공식 명칭으로는 '라제강'으로 불리지만,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원주민어 명칭인 '코민 메멤(Komin-memem)'으로 호명되어 왔다.

인정하고, 해당 수계와 상호 연관된 타 수체 및 생명체(인간 포함)까지 연결된 상호의존적 체계로 규정하였다(Câmara Municipal de Porteirinha/MG 2024).[19] 이 법률은 '자연 일반'에 대한 선언을 넘어 특정 하천을 명시적으로 권리 주체로 특정한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지방 입법이 자연권 개념을 점차 '생태 요소 단위'로 구체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지방 입법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 기본법과 개별 법률은 대체로 연방헌법 제225조가 규정하는 환경권 및 국가·사회 공동 책무를 규범적 근거로 삼되, 그 적용 범위를 자연의 권리 주체성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둘째, 그 확장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일부 도시는 "존재-번영-진화"라는 정형 문언을 통해 자연권을 선언하고, 다른 도시들은 플로리아노폴리스와 같이 도시계획·자원관리·농생태 실천 등 정책 영역에 자연권을 연결하거나, 참여·보존·회복의 행정의무 구조 속에 자연의 권리 보장을 명시화하고 있다. 즉, 지방 입법은 자연권을 하나의 동일한 모델로 확정하기보다, 지역의 생태 조건과 행정 체계에 맞게 다양한 문언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 차원의 입법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자연권 담론이 지방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를 통해 제도화되는 실천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각 지방정부의 자연권 조례와 기본법 개정은 지방자치 단위에

---

19) LEI Nº 2.251, DE 15 DE ABRIL DE 2024./Art. 1º Ficam reconhecidos os direitos intrínsecos do Rio Mosquito e sujeito de direitos, e de todos os outros corpos d`água e seres vivos que nele existam naturalmente ou com quem ele se inter-relaciona, incluindo os seres humanos, na medida em que são inter-relacionados num sistema interconectado, integrado e interdependente no âmbito do Município de Porteirinha.
법률 제2251호, 2024년 4월 15일 제정/제1조. 모스키투강의 고유 권리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포르테이리냐시의 범주에 속한 상호 연관성과 의존성을 지닌 통합체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권리를 비롯해, 모스키투강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모스키투강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수체 및 생명체의 권리가 인정된다(Câmara Municipal de Porteirinha/MG 2024).

서 환경 정책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도 평가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환경 규제 체계 안에서,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입법을 통해 생태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결합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대부분 연방헌법 제225조를 근거로 하면서도, 그 해석을 확장하여 자연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자연권 입법은 연방 차원의 법적 원칙이 지방 수준에서 구체화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공 거버넌스 속에서 실질적 제도로 정착되는 과도기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방 입법이 법적 선언을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단순히 환경 행정의 개선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브라질 시민 사회가 환경 문제를 더 이상 '개발 대 보전'의 이분법적 틀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의·연대·생명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입법 과정에는 지역의 환경 단체, 원주민 대표, 아프로-브라질 공동체,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시민 공청회와 환경 포럼이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 거버넌스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입법은 브라질 사회의 탈중앙화된 생태 민주주의 실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상의 '공동 책임 원칙'을 실질화하는 과정이자 지방정부가 국가 환경 거버넌스의 적극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Corralo and Bernardi 2024, 181-188).

실제로, 지방정부의 자연권 입법은 국가 환경 정책의 하향식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은 종종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나 농·축산업 중심의 경제 논리에 종속되어 왔으나, 지방 수준의 입법은 생태적 특성과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보니투, 세후, 과자라미림, 포르테이리냐 등과 같은 도시의 조례는 각 지역의 강, 숲, 습지 등 구체적 생태 공간을 권리의 주체로 지정함으로써, 생태계 단위의 행정 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은 곧 브라질 환경 담론의 다층적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방 차원의 자연권 입법은 브라질의 환경 담론이 보전에서 권리로, 관리에서 공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은 자연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생명권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브라질이 향후 생태 중심적 법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3. 브라질 사법부 판례와 자연권 담론의 법리적 전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자연권 개념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는 단계라면, 사법부의 판례는 그러한 규범적 시도가 헌법 질서 속에서 어떠한 법리적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검증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브라질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환경 보호를 공공 이익과 행정 규제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헌법 제225조에 기초한 환경권의 해석 범위를 인간의 복지에 한정하지 않고 생태계의 존속 조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례들은 자연을 곧바로 독립적 권리 주체로 승인하기보다는, 자연권 담론이 헌법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법리적 논증의 대상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특히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과 고등법원(Superior Tribunal de Justiça, STJ)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판례는 지방 입법이 지닌 상징적·선언적 성격을 곧바로 자연권의 확정으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자연권 담론이 헌법적으로 배제되지 않

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용·발전될 수 있는 해석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사법적 전개의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판례가 2016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직접 소송(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 ADI 4983이다. 이 사건은 특정 주(州)의 문화·경제 활동[20]을 명분으로 한 입법이 동물 학대 및 환경 훼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헌법 제225조가 보장하는 환경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문제 삼았다. 이는 자연을 독립적 권리 주체로 간주할 수 있는가를 최초로 쟁점화한 판례로, 연방대법원은 헌법 제225조에 근거하여 환경 보호가 단순한 정책 선택이나 행정적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행정 전반을 구속하는 헌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환경 훼손을 수반하는 행위가 문화적·경제적 가치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환경권을 인간의 이익에 종속된 파생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구조적 전제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이 판결은 자연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환경 보호의 규범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자연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21]

또한 고등법원(STJ)의 동물 학대 및 야생동물 보호 관련 판례 역시 환경법과 동물복지법의 경계에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사상적·법리

20) 이 사건에서는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행해져 온, 소를 추격해 넘어뜨리는 방식의 전통 경기인 바케자다(vaquejada)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21) ADI 4983 / CE - CEARÁ, "[...] A obrigação de o Estado garantir a todos o pleno exercício de direitos culturais, incentivando a valorização e a difusão das manifestações, não prescinde da observância do disposto no inciso VII do artigo 225 da Carta Federal, o qual veda prática que acabe por submeter os animais à crueldade. Discrepa da norma constitucional a denominada vaquejada. [...]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문화적 권리의 온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문화적 표현의 가치를 장려·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방헌법 제225조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 조항은 동물을 잔인한 행위에 노출시키는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바케자다'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https://jurisprudencia.stf.jus.br/pages/search/sjur366632/false (2025.10.24).

적 선구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2005년 바이아(Bahia) 주 법원의 이른바 '침팬지 수이사(Suíça)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주 법원은 동물원에 수용된 침팬지 수이사의 처우를 문제 삼은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심리하면서, 청원을 각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침팬지를 단순한 물건이나 행정 관리의 객체로 환원할 수 없는 감각 능력과 고통 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Cruz 2014).[22]

이러한 판례는 동물을 독립적인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헌법적 가치와 연결 지어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법원이 동물의 처우 문제를 단순한 소유권이나 관리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행위가 타 생명체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질문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이후 브라질 사법부가 동물 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생명 보호를 중시하는 해석 경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판례들을 곧바로 자연권의 사법적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사법부는 여전히 종(種)이나 생태계 전체의 권리 문제와 개별 동물의 복지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이러한 판례들은 환경법 해석이 피해 복구나 행정 규제에 한정되지 않고, 생명 보호와 고통 최소화라는 윤리적·법적 고려를 점차 통합해 가는 과정이자 환경 보호와 생명 보호의 해석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자연권 담론이 제도권 법리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22) 브라질 바이아주 살바도르(Salvador) 주법원(TJ-BA)은 2005년 동물원에 수용된 침팬지 '수이사(Suíça)'의 처우를 문제 삼아 제기된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 사건을 심리하였다(HC nº 833085-3/2005, Tribunal de Justiça do Estado da Bahia). 법원은 인신보호청원이 인간을 전제로 한 절차라는 이유로 청원을 각하하였으나, 판결 과정에서 침팬지를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감각 능력과 고통 인식 능력을 지닌 생명체로 언급하며, 동물의 처우 문제가 헌법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 사건은 동물을 독립적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한 판례는 아니지만, 브라질 사법 담론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시킨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사법적 흐름의 의의는, 자연권 담론이 단지 철학적 주장이나 지방 입법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 해석과 판례 논증의 장에서 검토·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브라질의 사법부는 '자연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기보다는, 인간의 환경권과 생태계 보호를 둘러싼 기존 헌법 가치들을 재배열하면서, 자연권 논의가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방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는 자연권을 직접적으로 확정하기보다, 헌법 제225조를 중심으로 환경 보호의 규범적 밀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오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접근은 지방정부 차원의 자연권 입법을 즉각적으로 승인하거나 대체하지는 않지만, 자연권이 헌법 질서와 양립 가능한 논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사법부의 판례는 자연권을 선언하는 주체라기보다, 자연권 담론이 제도권 법질서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중개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적 축적은 지방 입법의 확산과 맞물려, 연방 의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PEC)가 어떠한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브라질 자연권 논의의 제도적 한계와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차원의 자연권 입법 확산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연권 헌법화 논의와 일정한 제도적 연속성을 형성한다. 특히 2023년 브라질 연방 하원의원 셀리아 샤크리아바가 공식 발의한 헌법 개정안(PEC)은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 기관에 자연의 보호·보존 의무를 부과하며,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시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 실험이 연방 헌법 질서로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방 입법과 연방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가 곧바로 결합된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연결 고리는 정치 과정, 법기술, 그리고 사법적 수용이라는 세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연권의 헌법화는 입법 경쟁과 정치적 연합·대립의 구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자연의 권리가 어떠한 내용과 대표·집행 구조를 통해 법적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이를 어떠한 헌법적 가치와 논증을 통해 수용하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연방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생명·생태 공동체의 존엄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여부는 선언적 서술이 아니라, 연방대법원(STF)과 고등법원(STJ)의 구체적 판시와 그에 대한 선행 연구에 근거해 후속 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 차원의 자연권 입법 확산을 곧바로 사법부의 자연권 인정이나 연방 차원의 법리 전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지방 기본법과 조례는 자연권 담론을 제도적 언어로 가시화하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실제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조문 구조와 집행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구체적 분쟁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적용되는지는 별도의 사법적 검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 입법 사례는 자연권의 '성립'을 단정하기보다는, 자연권 개념이 브라질 법질서 내부로 진입하는 하나의 경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Corralo and Bernardi 2024, 181-188).

이와 더불어, 최근 자연권 논의는 룰라 3기 정부가 제시한 '생태 전환(Transição Ecológica)'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룰라 정부의 생태 전환 담론은 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 경제·산

업·사회정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국가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후 정책을 투자·고용·불평등 완화와 결합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 원주민 의원단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연의 권리' 담론은 자연을 헌법적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개발 중심의 정책 논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규범적·헌법정치적 기획에 가깝다. 양자는 환경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지만, 정책 수단과 법적 접근 방식, 그리고 정치적 연합의 구성에 있어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곧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브라질은 여전히 농업·광업·목축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권 법제화나 환경 규제 강화는 의회 내 보수·개발 친화 세력에 의해 경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문제화되곤 한다. 실제로 환경 인허가 제도 개편이나 보호구역 설정을 둘러싼 최근의 입법 논의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상이한 담론이 의회 정치의 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은 자연권 담론의 제도화가 단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정치 내부의 담론 투쟁과 힘의 균형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법리적·철학적 합의의 부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문적·사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학자들은 자연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기존 법체계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생태 법학자들은 자연권을 인권 체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자연권 입법과 판례 해석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와의 제도적 연계 부족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브라질의 자연권 담론은 원주민과 킬롬부 공동체의 생태적 지식과 실천에서 중요한 영감을 받아 형성되었음에도,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이들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자연권 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전통 생태 지식의 제도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자연권 논의는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실험적 가치를 지닌다. 지방정부의 입법, 사법부의 판례, 시민 사회의 생태 운동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는 환경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2023년 샤크리아바 의원의 헌법 개정안 발의 역시 이러한 흐름을 연방 헌법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브라질의 자연권 법제화는 아직 완결된 제도라기보다 진행 중인 법·정치적 담론에 가깝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법적 정의의 범위를 확장하며, 생태계의 존속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환경 위기에 대한 중요한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브라질의 사례는 법이 단순한 규제 장치를 넘어, 존재들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규범적 언어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Ⅳ. 나가며: 브라질 환경 담론의 전환과 자연의 권리 법제화의 의미

오늘날 브라질은 아마존 파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 환경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경제

적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브라질의 환경 위기는 식민 지배를 통해 축적된 역사적 착취 구조와 문화적 단절의 유산 속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이다. 부아르키 지 올란다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땅에서 뿌리 뽑힌 채 살고 있다"(De Holanda 2017, 43). 그의 통찰은 브라질이 생태적으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지속적인 "뿌리 뽑힘"을 경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곧, 원주민과 아프로-브라질 전통 공동체의 지혜가 배제된 채 환경을 자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한, 브라질 사회는 근원적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브라질은 최근 환경 보호와 사회 정의를 통합하는 생태 중심적 법질서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원주민과 아프로-브라질 공동체의 전통적 생태 지식 속에서 살아 있는 철학적 원리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 브라질의 생태 법학적 상상력은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을 근대 법제 속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는 여전히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사회는 경제 성장과 환경정의 사이의 균형이라는 근본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자연을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입법적 전환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2023년 제안된 헌법 개정안(PEC)은 자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며, 환경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 중심적 법질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태 헌법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의 환경 담론은 지난 수십 년간 '자원 관리 중심의 개발 담론'에서 '생태적 정의를 지향하는 법 담론'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브라질의 헌법·지방 입법·사법부 판례에 나타난 자

연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찾고자 하였다. Ⅰ장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과 원주민 공동체의 생존이 직결된 생태 위기를 배경으로, 브라질이 환경 문제를 단순한 보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재구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폈다. Ⅱ장에서는 식민 유산, 토지 불평등, 그리고 원주민 및 아프로-브라질 공동체의 생태적 지식이 현대 환경 정책과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사회적 구조가 오늘날 환경 불평등의 근원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Ⅲ장에서는 헌법 제225조, 지방정부의 자연권 입법, 사법부 판례를 중심으로 브라질이 인간 중심적 헌법주의에서 생태적 헌법주의로 이동하는 구체적 가능성을 추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브라질의 자연권 논의가 단순히 새로운 법 조항의 제정이나 행정 정책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존재론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법을 인간 사회의 질서 규범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연을 공동체적 존재로 포함시키는 "생명권적 법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자연권 법제화는 아직 제도적 불균형 속에 놓여 있다. 지방정부의 선언적 입법은 헌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방 차원의 정책은 여전히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 논리를 우선시한다. 사법부의 판례 또한 일관된 법리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법적 주체로서의 자연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생태 담론이 여전히 도시 엘리트·학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원주민·전통 공동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브라질의 자연권 담론이 진정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전통 생태 지식과 지방 거버넌스가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브라질의 자연권 논의는 여전히 '권리 담론의 언어'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적 권리로서의 자연 보호는 인간 법질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전환을 위

해서는 '자연의 권리'를 '인간과 자연의 상호 책임'으로 확장하는 윤리적·철학적 차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즉, 법적 권리의 제도화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위 원리를 교육·문화·경제정책 전반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라질의 생태적 헌법주의는 아직 완결된 모델이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와 생태가 교차하는 실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사례는 국제 환경 거버넌스 속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에콰도르·볼리비아의 헌법적 자연권 제정이 국가 중심의 상향식 모델이라면, 브라질의 경우는 지방 입법·시민 사회·사법부가 결합된 상·하향식 혼합형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자연권 법제화가 단일한 법적 선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법 문화적 과정임을 입증한다. 나아가 이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브라질의 자연권 논의는 미완의 실험이지만, 그것이 제기하는 철학적·법적 질문 '법은 인간을 넘어 자연을 품을 수 있는가?'는 오늘날 인류의 문명적 과제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되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브라질의 응답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 실천적 성과는 헌법의 문장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생태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 윤리의 구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권의 법제화는 단순한 환경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브라질 사회가 탈식민적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적 뿌리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일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침묵 당

해 온 공동체들의 지혜를 다시 사회적 담론의 중심으로 복귀시키는 문화적 복원의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의 환경 담론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시대에 법이 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수단을 넘어, 다양한 존재들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봉철 외(2023),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원주민 관련 법제 연구 -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14권, 2호, pp.337-374.

김봉철/임소라(2024), 「브라질 원주민의 토지권에 대한 법제: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 브라질 헌법까지」,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3권, 3호, pp.119-145.

김영철(2021), 「브라질 원주민 토지의 법적 권리와 분쟁」, 라틴아메리카연구, 제34권, 1호, pp.19-48.

양은미(2023), "브라질 원주민 문제의 현재화와 상태시민성: 까바나젱과 녱가뚜어의 의미 복원", 신정환 외 편, 『라틴아메리카 생태를 읽다』, 알렙, pp.136-154.

이미정(2023), "브라질 인프라 개발과 국토 통합의 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위", 신정환 외 편, 『라틴아메리카 생태를 읽다』, 알렙, pp.155-178.

장수환(2021), 「브라질 산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경제활동 분석」, 중남미연구, 제40권, 4호, pp.249-270.

조희문(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외법논집, 제44권, 3호, pp.443-470.

_____(2025), 『생태법학 입문: 법의 언어로 자연과 대화하는 법』, 알렙.

최승필(2011), 「브라질 환경법의 구조와 기후변화의 법제적 대응」, 중남미연구, 제29권, 2호, pp.193-224.

Câmara Municipal de Bonito/PE(2020), "Lei Orgânica de Bonito", https://bonito.pe.leg.br/wp-content/uploads/2023/02/LEI-ORGANICA.pdf

(2024.12.27).

Câmara Municipal de Florianópolis/SC(2019), "Lei Orgânica de Florianópolis", http://leismunicipa.is/suxnp (2024.12.27).

Câmara Municipal de Paudalho/PE(2020), "Lei Orgânica de Paudalho", https://transparencia.paudalho.pe.gov.br/uploads/5310/2/importar/2020/Resolucao/Resolucao-21-2020.pdf (2024.12.27).

Câmara Municipal de Serro/MG(2022), "Lei Orgânica de Serro", http://leismunicipa.is/iurzx (2024.12.27).

Câmara Municipal de Guajará-Mirim/RO(2023), "Lei Orgânica de Guajará-Mirim", https://sapl.guajaramirim.ro.leg.br/materia/3141 (2024.12.27).

Câmara Municipal de Porteirinha/MG(2024), "LEI Nº 2.251, DE 15 DE ABRIL DE 2024", http://leismunicipa.is/19mct (2024.12.27).

Carneiro, Edison(1978), *Candomblés na Bahia*, 6ª edição,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_____(1958), *O quilombo dos Palmares*, 2ª edição (revista), São Paulo: Companhia Editora Nacional.

Castro, Eduardo Viveiros de(1996), "Os pronomes cosmológicos e o perspectivismo ameríndio", *Mana*, Vol.2, No.2, pp.115-144.

_____, Yeda Pessoa de(1983), "Das línguas africanas ao português brasileiro", *Afro-Ásia*, Vol.14, pp.81-106.

Cenci, Daniel(2020), "Climate Change: Paradoxes in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and Protocols in Latin America and Brazil", in Cristian Lorenzo (ed.), *Latin America in Time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Springer, pp.157-170.

Corralo, Giovani da Silva and Bernardi, Lucas Dreher(2024), "O novo

constitucionalismo latino-americano e as leis orgânicas municipais: a eficácia jurídica dos direitos da natureza", in Marcia Andrea Bühring *et al.* (coord.), *Direito e sustentabilidade I*, Florianópolis: Conselho Nacional de Pesquisa e Pós-Graduação em Direito (CONPEDI), pp.173-190.

Comissao Pró-Índio de São Paulo, "Quilombolas no Brasil," https://cpisp.org.br/direitosquilombolas/observatorio-terras-quilombolas/quilombolas-brasil/ (2025.2.4).

Cruz, Edmundo(2014). "Sentença do Habeas Corpus impetrado em favor da chimpanzé Suíça", *Revista brasileira de direito animal*, Vol.1, No.1, https://doi.org/10.9771/rbda.v1i1.10259 (2025.12.8).

Dean, Warren and Schwartz, Stuart B.(1997), *With Broadax and Firebrand: The Destruction of the Brazilian Atlantic Fore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e Holanda, Sérgio Buarque(1936), *Raízes do Brasil*,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김정아 역(2017),『브라질의 뿌리』, 후마니타스(주).

Dos Santos, Womualy Gonzaga(2023), "A Criminalização dos Capoeiras", *Conexões*, Vol.21, pp.1-21.

French, Howard W.(2021), *Born in Blackness*, New York, NY: Liveright, 최재인 역(2023),『본 인 블랙니스: 아프리카, 아프리카인, 근대 세계의 형성, 1471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책과함께.

Gabiente da Deputada Célia Xakriabá (PSOL/MG)/Câmara dos Deputados(2023), "PROPOSTA DE EMENDA À CONSTITUIÇÃO Nº, DE 2023", https://ecojurisprudence.org/wp-content/uploads/2024/08/PEC-DIREITOS-DA-NATUREZA.pdf (2025.1.6).

Nunes, Felipe S. M. *et al.*(2024), "Lessons from the historical dynamics of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in the Brazilian Amazon", *Scientific Reports*, Vol.14, 1828, https://doi.org/10.1038/s41598-024-52180-7 (2025. 12.8).

Padovan, Maria da Penha(2024), "O efeito das árvores na interceptação da chuva e na umidade do solo em café sombreado com glicídia, bananeira ou ingá", João Batista Silva Araújo *et al.* (org.), *Café sombreado: uma abordagem multidisciplinar*, Vitória: Incaper, pp.63-88.

Patriota, Antonio de Aguiar (2008), "An Introduction to Brazilian Environmental Law", *The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40, pp.611-617.

Pelizzon, Alessandro; Santiago, Mariana Ribeiro(2020), "The 'Harmony with Nature' Paradigm in Brazil", *Revista Argumentum*, Vol.21, No.1, pp.465-487.

Presidência da República Casa Civil(1988),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DE 1988,"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constituicao/constituicao.htm (2025.1.15).

_____(1973), "LEI Nº 6.001, DE 19 DE DEZEMBRO DE 1973,"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6001.htm (2025.1.15).

_____(1981), "LEI Nº 6.938, DE 31 DE AGOSTO DE 1981,"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6938.htm (2025.1.15).

_____(1997), "LEI Nº 9.433, DE 8 DE JANEIRO DE 1997,"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9433.htm (2025.1.15).

_____(1998), "LEI Nº 9.605, DE 12 DE FEVEREIRO DE 1998,"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9605.htm (2025.1.15).

_____(2000), "LEI Nº 9.985, DE 18 DE JULHO DE 2000," https://

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9985.htm (2025.1.15).

_____(2006), "LEI Nº 11.428, DE 22 DE DEZEMBRO DE 2006,"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04-2006/2006/lei/l11428.htm (2025.1.15).

_____(2007), "LEI Nº 11.516, DE 28 DE AGOSTO DE 2007,"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07-2010/2007/lei/l11516.htm (2025.1.21).

_____(2009), "LEI Nº 12.187, DE 29 DE DEZEMBRO DE 2009,"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07-2010/2009/lei/l12187.htm (2025.1.15).

_____(2012), "LEI Nº 12.651, DE 25 DE MAIO DE 2012,"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1-2014/2012/lei/l12651.htm (2025.1.15).

_____(2015), "LEI Nº 13.123, DE 20 DE MAIO DE 2015,"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5-2018/2015/lei/l13123.htm (2025.1.15).

_____(2024), "LEI Nº 14.850, DE 02 DE MAIO DE 2024," https://www.jusbrasil.com.br/legislacao/2444774683/lei-14850-24 (2025.1.15.).

Soster, Sandra Schmitt and Pratschke, Anja(2021), "Jesuit Reductions as a System: A necessary review", *V!RUS*, 22, July, http://www.nomads.usp.br/virus/_virus22/?sec=6&item=1&lang=en (2025.12.8.).

United Nations Human Rights(2025), "UN Experts Welcome Brazil's Veto of Environmental Licensing Bill Provisions,"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5/09/un-experts-welcome-brazils-veto-environmental-licensing-bill-provisions (2025.12.8).

Wolford, Wendy(2008), "Environmental Justic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Brazilian Cerrado", in D. V. Carruthers *et al*. (ed.), *Environmental Justice in Latin America: Problems, Promise, and Practic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정경원 외 역(2012), "브라질 세하두(Cerrado)에서의 환경정의와 농업개발", Carruthers, D. V. 외(편),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환경정의: 쟁점, 약속, 실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HUINE, pp.286-317.

LexML Brasil, http://www.lexml.gov.br

<국문요약>

본 연구는 브라질의 환경 담론이 인간 중심적 보호 담론에서 벗어나, 자연을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자연권 법제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1988년 제정된 브라질 연방헌법 제22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은 본래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지방정부의 기본법 개정과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연방대법원(STF) ADI 4983 판결과 2005년 고등법원(STJ)의 판례는 자연을 생태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생태적 헌법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상 자연권의 명문화 부재,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 원주민 및 아프로-브라질 공동체의 참여 제한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브라질 환경 법제가 나아가야 할 네 가지 방향으로, 자연권의 헌법적 명문화, 전통 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환경 교육 및 국제 협력 확대를 제시한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개혁은 단순한 환경 규제의 개선이 아니라, 식민지적 개발 논리로부터 벗어나 문화적 뿌리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법 윤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브라질의 사례는 법이 인간의 언어를 넘어 모든 생명체의 공존을 보장하는 윤리적 언어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환경 담론, 자연의 권리, 환경정의, 헌법 제225조, 전통 공동체 생태 지식

▌논문투고일자: 2025년 11월 07일
▌심사완료일자: 202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12월 19일